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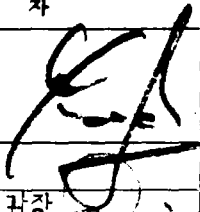


# 공고

## 지안용지

고공회270호  
경정사학

분류기호 문서번호 420.4.	(전화번호 242 )	경정사학
처리기간	결 제 자	
시행일자 가 12. 27.	제2부시장	 
보존년한		
보 조 기 관	도시계획국장 12/29 12/29 12/29 12/29	경지국장 서무과장 도시계획과장 복합과장 시민과장 법무과장 관리과장 문서관리과장 한지과장
기안책임자	정영호	71. 12. 27
정유수 참조	과안함조	발신
제 목	방음 토지구획정리 사업기간 연기	
제안 내부분지		
건선부 공고 제11호 (67. 1. 21)로 인가를 독한 방음 토지구획정리사업 의가 은 당시보다 여력기적 여건(지원미확보로 인한 공사부진 및 지구확장에 따른 사 업발증 때 사업계획 일부 변경) 연동으로 인가 시행기간내에 서동과 확정적분 기타 잡무 처리등으로 인표할수 없으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조 동법제13 조에 의거 사업시행 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고 과안과 같이 시행하 지 아니	정 27 관 인 승	
. . . 아 . . .		123

도시계획국  
사무과장  
정영호

0201-1-8A

4-1

190mm X 268mm 배상 저50g/m2

1969. 11. 10. 승인

(서울특별시청 광복대역 40도선 인쇄)

지구명	인가면적	7.만년제미식물	7.만년해식물안토	농경	그외
망우지구	1,957,712평	693,602평	1,264,110평	64.6%	
제2안					
서울특별시공고 제 1호					
망우토지구획경리사업 기간 연기					
서울도시계획사업 망우토지구획경리사업지구외 공사시공일부와 확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토지구획경리사업법제5조 동법 제3조에 의거 사업시행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기 하였고 공고 합니다.					
1971. 12. . . . .					
서울특별시					
사업연기 조서					
지구명	인가면적	광초준공예정일	연기에정일	비	
망우지구	1,957,712평	70. 12. 31.	73. 12. 30.	3년	
제3안					
수신	돌대문구철장		발신	시장	
제4안					
서울도시계획사업 망우토지구획경리사업지구외 공사시공일부와 확정사무의 처리를 위한 사업기간을 별첨 공고문 사본과 같이 연기 되었기 관할구청 게시판에 게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널리 알려 주기 바랍니다					
첨부 공고문 사본 1부. 끝.					
제4안					
수신 공보실장 . . . . .					

사무총장
부총장
기획처장
행정처장
인사처장
재무처장
법무처장
시설처장
연구개발처장
정보통신처장
협력처장
기타

제목 동 건

1. 별저 공근문사본과 같이 망우<sup>2</sup> 지구 확정터사업기간을 연기하였으니  
입관신문 및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가. 공근문본 시중 입관지

나. 예산액 - 금 48,000 원

2단 x 30행 x 42" x 2개사 = 48,000원

다. 저출내륙 양우지구 사유지 유주료

제5안

수신 건설부 장관

발신 시장

참조 단지 계획과장

제목 동 건

당시가 실시하고 있는 망우<sup>2</sup> 지구 확정터사업지구는 인가당초보다 어려  
까지 어간 (재원미확보로 인한 공사부진 및 지구확장에 따른 사업발주대 사업  
계획 일부변경) 변동으로 인가시행 기간내에 시공과 확정처분 기타 잡무처리등  
을 완료할수 없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조 동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별첨  
공근문사본과 같이 기간을 연기하였기 보고 합니다.

첨부 1. 공근문 사본 1 부.

2. 지연사유 및 기간연기 이유 1 부. 같.

### 지연 사유 및 기관 연기 이유

사업시행면적 1,957,712명중 1,791,000명은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여 시공을 진행하고 있으나 자원미확보로 인한 공사부진과 1969. 11. 11. 건설부 공고 제115호로 802,000명을 편입,지구 면적확장으로 사업량 증대를 가져왔고 환지 미<sup>원</sup>정착 지역인 공농동 일부 (261,000명) 에 대하여는 건설부 공고 제198호 (71. 4. 7)로 서울도시계획 재정비 경리에 따른 노선 위치 변경과 송도 지역 변경됨에 따라 동지역내의 구획 및 가로를 재조정하여 사업계획 일부 변경인가를 득한후 사업을 시행키 위하여 기관을 연기로서함